

### 이전가격 공유 시리즈

제3회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안된 조치 및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번 이전가격 시리즈는 아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1. Covid-19 로 인한 공급사슬 붕괴 : 기존 기업의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 및 그에 따른 부차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보내드린 시리즈 참조)
- 2. Covid-19 이전의 그룹사간의 가격 정책이 더이상 적용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새로운 가격정책의 필요성
- 3. 이자비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조치.

- 4.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또는 변동하는 수익성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 5. 이전가격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사업 구조 조정
- 6. Covid-19로 인해 저위험 기업들은 오히려 위험이 낮아지는 가?
- 7. Covid-19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협상 및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 8. 이전가격 세무조사 추세: 납세자를 위한 완화된 접근 혹은 국가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접근계획

### 배경

법인소득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에 대한 2017년02월24일에 제20/2017/ND-CP호시행령 ("제20호 시행령")의 제8조 3항 규정은 모호한 내용과 세금 비용, 높은 대출을 이용하는 회사들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내 및 해외 기업 / 경제 단체의 많은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Covid-19 이후 생산 및 사업 활동 유지 및 강화,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할 대책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20호 시행령의 제8조 3항을 개정한 제68/2020/ND-CP호 시행령 (제68호시행령)을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 제3회에서 딜로이트는 제68호 시행령과 관련된 자세하고 다양한 관점의 분석으로 Covid 19 이후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주목할만한 사항

항목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
순이자비용	본 시행령은 당기에 발생한 순이자비용(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차감 후)에 적용됨. 과거 제20호 시행령은 이자비용과 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
30%	EBITDA (당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순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차감후)의 비율
5 년1	당기에 공제되지 않은 순이자비용이 다음기에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는 최대한 기간
Form 1	이 양식은 제20호 시행령에 따른 Form 1 의 양식을 대체함
발효	본 시행령은 2020년06월24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이 규정은 신용,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정부우대대출에 적용되지 않음
2017-2018 기간에 대한 적용	
2021년 1월 1일	납세자가 이자비용 공제액 및 해당 법인세납부액을 다시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지역 세무국에 제출해야 함. 재확정 된 2017년- 2018년 기간의 불공제 이자비용 (재확정 후)은 다음기로 이월될 수 없음.
5 년2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초과 납부된 법인세(해당 이자상당액 포함)은 <b>2020년부터 연속적인 5년간</b>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과 <b>상계됨</b>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는 2020년부터 5년이내에 법인세납부액과 상계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세납부액을 다시 확정하도록 현지 세무국에 요청할 수 있음. 이 절차는 납세자가 아닌 세무 당국에서 수행 되며, 관련 세무 조사는 다시 수행하지 않음

#### 긍정적은 영향



Covid-19 이후 이자비용과 관련된 세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및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자 비 용 에 서 예 금 이 자 수 익 대출이자수익을 상계함에 따라 이자비용 한도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룹사의 관점에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실무관행을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음

#### 주목할만한 고려 사항



예금과 대출에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을 확정하는 방법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연도에 대한 대응



적용세율및 법인세 인센티브가 다른 여러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을 어떻게 확정 할 것인지?

### 기업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초과납부된 법인세납부액 및 불공제 된 이자비용 검토, 재확정
- 해당 CIT 수정신고 제출
-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 지역 세무서와 세무금액을 재확정하기 위한 업무 진행

2019

- 초과 법인세납부액 및 불공제된 이자비용검토, 재확정
- 이연법인세가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해당 CIT 수정신고 제출



 Covid 19 대유행 후 사업 활동을 유지, 극복 및 촉진하며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이 단기 및 장기 재무 및 세무 계획과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함

### 2020년부터

- 사업 및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2020년의 납세 의무에 대한 제68호 시행령의 영향을 추정
- 법인세 확정신고로 인해 공제 가능한 이 자 비 용 을 확 정 하 는 방 법 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 함
- 이자비용 상계 및 5 년 이월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룹사의 내부 자금거래의 실행 및 조정과 관련된 적절한 전략을논의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 필요
- 여러가지 수준에서 그룹상의 세금 비용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고려
  - 내부 금융 거래, 가치 사슬 구조 조정
  - 자본 및 현금 흐름의 구조 조정
  - 내부 차입/대출 정책을 재검토하여 이자비용의 비용인정 한도 및 이월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수 있도록 조정

요약하자면 위 내용은 제68호 시행령을 수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및 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나 명확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시며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사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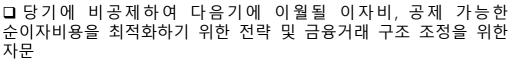
규정준수 <u>여부</u>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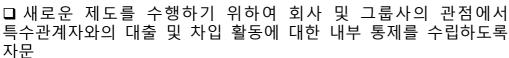
- □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 확정에 대한 정확성 검토 및 자문
- □ 2017, 2018 및 2019의 과세연도에 대한 확정신고 제출 지원 및 자문
- □ 관련 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예: 이연법인세)



### 세무 당국과의 업무 지원

- □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을 확정할 때 납세자의 우려사항 및 이슈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논의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함
- □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법인세납부액을 재확정하기 위한 세무 당국과의 업무를 지원 함





□ 규정 준수 강화 및 세금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그룹사 및 특수관계자의 다른 거래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자문



전략 자문

#### 향후 저희 공유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서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연도의 손실 발생 또는 수익성 변화에 따른 사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드릴 예정입니다.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Dinh Mai Hanh National TP Lead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Nguyen Thi Khanh Ha **Tax Director** +84 28 710 14470 hatkng@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Director** +84 28 710 14341 quantat@deloitte.com



**Hoang Thi Le Phuong Tax Senior Manager** +84 28 710 14373 phuongthoang@deloitte.com



**Mukherjee Supratik Tax Senior Manager** +84 28 710 14450 supmukherjee@deloitte.com



**Ha Duc Thanh Tax Senior Manager** +84 24 710 50105 thanhha@deloitte.com



Le Na **Tax Manager** +84 24 710 50035 nale@deloitte.com



**Nguyen Trung Ngan Tax Manager** +84 24 710 50098 ngantnguyen@deloitte.com tungtang@deloitte.com anhtran@deloitte.com



**Tang Minh Tung** Manager +84 28 710 14363



**Tran Hong Anh** Manager +84 24 710 50063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